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본조사서 확인 업무를 부여받은 확인자에 대하여 보상 관련 실무
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보상 관련 공인민간자격을 소지한 자로
정하도록 하여 기본조사서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보상전문기관 조사자와 확인자를 포함한다.”를 “보상전문기관의 조사자와 확인자를 말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확인자”를 “확인자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보상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
2. 보상 관련 공인민간자격(「자격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보상 관련 민간 자격을 말한다) 소지자

제12조 중 “2022년 1월 1일”을 “2025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조사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	제2조(정의) -----		
1. (생 략)		-----		---
2. “업무담당자”라 함은 사업시행자 소속 직원 중에서 제4조에서 정한 조사자와 확인자(보상전문기관이 보상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<u>보상전문기관 조사자와 확인자를 포함한다.</u>)를 말한다.		1. (현행과 같음)		
3. · 4. (생 략)		2. -----		
제4조(업무담당자) ① (생 략)		-----		
② <u>확인자</u> 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본조사서 확인 업무를 부여받은 자로서, 조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기본조사서의 확인을 완료한 때에는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.		-----		
<u><신 설></u>		-----		<u>보상전문기관의 조사자와 확인자를 말한다)-----.</u>
<u><신 설></u>		3. · 4. (현행과 같음)		
		제4조(업무담당자) ① (현행과 같음)		
		② <u>확인자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)</u> -----		

		1. <u>보상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</u>		
		2. <u>보상 관련 공인민간자격 (「자격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보상 관련 민간 자격을</u>		

③・④ (생 략) 제12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<u>2022년 1월 1일</u>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<u>말한다) 소지자</u> ③・④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5년 1월 1</u> <u>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
---	---